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16년 예천군 지방재정공시
- 예산편 -



예 천 군

목 차

I.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3
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념	3
2. 재정공시 운용방법	3
 II. 예산기준 재정공시	 4
1. 공통공시 총괄	5
2. 예산규모	6
3. 재정여건	11
4. 재정운용계획	14
 III. 별지	 23
1. 유사 자치단체	23
 IV. 관련법규	 24

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2 재정공시 운용방법

☐ 공시범위

○ 예산공시 : 예산규모, 재정지표(자립도, 자주도) 등

※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예산공시 추가

○ 결산공시

- 공통공시 :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10개 분야 54개 세부항목)

* 세입결산, 세출결산, 재정여건, 채무 및 부채 등

- 특수공시 :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설치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공시시기 : 예산공시(2월), 결산공시(8월), 수시공시는 수시로 실시

☐ 공시방법 : 지자체 홈페이지, 소식지, 언론 등

2016년 예천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6. 2.

예천군수 (인)

- ◆ 우리 예천군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3,834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5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3,267억원)보다 567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31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996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07억원입니다.
- ◆ 우리 예천군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0.86(7.49)%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9.61(56.24)%입니다.
 -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우리 예천군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8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예천군의 재정은 유사 자치단체와 살림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중앙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으며, 중앙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추세에 따라 재정자주도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경북도청의 이전과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및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예천군의 재정건전성은 차츰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www.ycg.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예천군 홈페이지 참여마당 게시판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최재훈

전화번호 : 054-650-6815

이 메 일 : ilmare85@korea.kr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예천군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3,834	3,576	258	3,267	3,169	98
	세 출 예 산	3,834	3,576	258	3,267	3,169	98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 정 자 립 도 [당 초]	10.86 (7.49)	11.25 (6.49)	△0.39 (1.00)	14.73 (9.48)	13.99 (8.91)	0.74 (0.57)
	재 정 자 주 도 [당 초]	59.61 (56.24)	60.28 (55.51)	△0.67 (0.73)	61.87 (56.62)	61.77 (56.68)	0.10 (△0.06)
	통합재정수지[당초]	78	71	6	28	22	6
재정운용계획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과 계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 산 편 성 기 준 별 운 영 상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 영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단체 : 군·3(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평창군, 강원 철원군, 강원 고성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전북 순창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성주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 별지 1 참고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예천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83,393	325,990	-	39,535	17,868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83,103	321,145	323,606	357,576	383,39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0,357	100.0	297,945	100.0	300,595	100.0	325,610	100.0	325,990	100.0
지 방 세	10,260	3.8	10,787	3.6	11,000	3.7	13,000	4.0	14,700	4.5
세외수입	21,597	8.0	19,413	6.5	6,671	2.2	8,125	2.5	9,702	3.0
지방교부세	136,100	50.3	154,977	52.0	155,755	51.8	155,330	47.7	154,122	47.3
조정교부금 등	3,700	1.4	4,200	1.4	4,300	1.5	4,300	1.3	4,800	1.5
보 조 금	98,700	36.5	108,568	36.5	108,337	36.0	129,343	39.7	131,666	40.3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14,532	4.8	15,513	4.8	11,000	3.4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 예산액 연도별 추이

(단위 : 백만원)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예천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83,393	325,990	-	39,535	17,86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83,103	321,145	323,606	357,576	383,39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0,357	100.0	297,945	100.0	300,595	100.0	325,610	100.0	325,990	100.0
일 반 공 공 행 정	9,465	3.5	10,204	3.4	11,391	3.8	15,542	4.7	17,677	5.4
공공질서 및 안전	8,923	3.3	13,757	4.6	12,543	4.2	11,984	3.7	12,486	3.8
교 육	1,827	0.7	2,191	0.7	1,969	0.6	1,936	0.6	1,838	0.6
문 화 및 관 광	14,866	5.5	21,873	7.3	19,291	6.4	28,476	8.7	35,454	10.9
환 경 보 호	36,672	13.6	35,811	12.0	29,342	9.7	29,410	9.0	27,328	8.4
사 회 복 지	41,766	15.4	45,328	15.2	56,396	18.8	62,894	19.3	64,757	19.9
보 건	6,536	2.4	7,281	2.4	6,563	2.2	6,345	1.9	6,304	1.9
농 립 해 양 수 산	55,509	20.5	64,929	21.8	66,644	22.2	67,088	20.6	63,987	19.6
산 업 · 중 소 기 업	758	0.3	504	0.2	1,244	0.4	4,811	1.5	1,314	0.4
수 송 및 교 통	11,153	4.1	12,433	4.2	9,551	3.2	9,229	2.8	7,368	2.3
국 토 및 지 역 개 발	33,516	12.4	31,790	10.7	31,463	10.5	31,137	9.5	29,796	9.1
과 학 기 술	-	-	-	-	-	-	-	-	-	-
예 비 비	4,311	1.6	4,610	1.6	4,499	1.5	3,498	1.1	4,398	1.4
기 타	45,056	16.7	47,233	15.9	49,700	16.5	53,261	16.7	53,283	16.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 예산액 연도별 추이

(단위 : 백만원)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예천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49,869	499,609	473,753	493,937	514,192	2,431,360	3.4
	자 체 수 입	51,817	51,115	52,553	49,634	52,790	257,909	0.5
	의 존 수 입	329,978	349,480	364,987	366,311	372,433	1,783,189	3.1
	지 방 채	6,000	9,000	4,000	7,000	-	26,000	5.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2,074	90,014	52,213	70,992	88,969	364,262	9.4
세 출		449,869	499,609	473,753	493,937	514,192	2,431,360	3.4
	경 상 지 출	85,755	97,658	81,001	79,846	76,358	420,618	△2.9
	사 업 수 요	364,114	401,951	392,752	414,091	437,834	2,010,742	4.7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예천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59,053	391,622	32,569	9.07
예천군	357,576	383,393	25,816	7.22
출자·출연기관	1,476	8,229	6,753	457.42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출자출연기관(2개) : (재)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재)예천군민장학회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예천군청 : <http://www.ycg.kr>
 - (재)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 <http://www.insect-expo.co.kr/>
 - (재)예천군민장학회 : <http://www.ycscholarship.or.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예산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86(7.4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0.86 (7.49)	325,990	35,402 (24,402)	290,588	-	- (11,000)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11.78	10.14	10.71 (5.88)	11.25 (6.49)	10.86 (7.49)
최종예산	11.53	12.22	11.22 (5.82)	12.34 (6.47)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예산군의 경우 세수의 부족으로 유사단체 평균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경북도청의 이전과 신도시 조성에 따라 인구 및 세수가 증가함에 따라 차츰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예산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9.61(56.2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자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9.61 (56.24)	325,990	194,324 (183,324)	131,666	-	- (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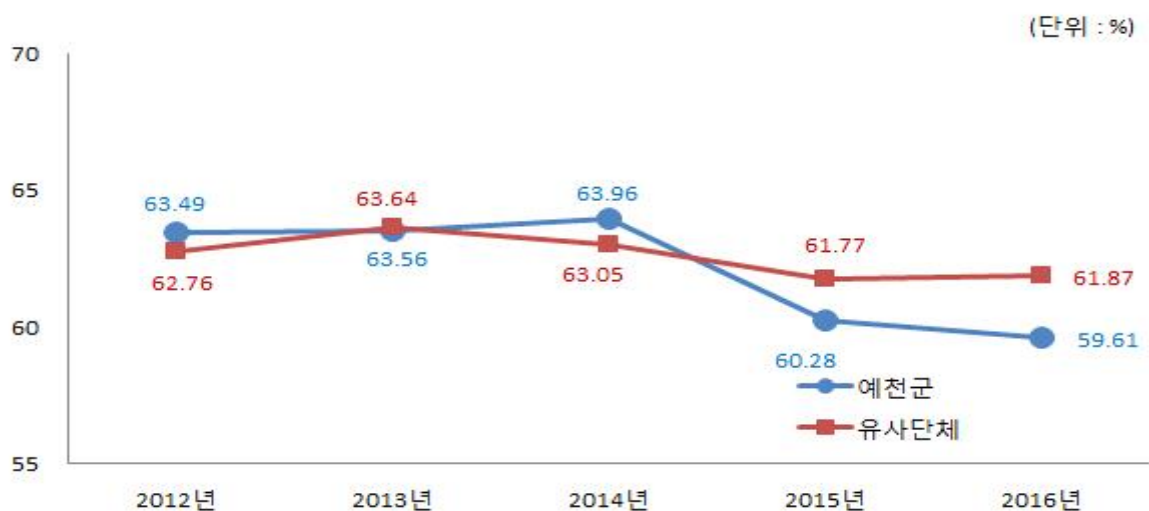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자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63.49	63.56	63.96 (59.12)	60.28 (55.51)	59.61 (56.24)
최종예산	66.40	65.30	65.55 (60.15)	60.52 (54.64)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 나라살림 악화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추세로 재정자주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유사단체 평균에서도 동일하기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예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42,739	351,820	6,303	4,781	△1,522	15,333	350,299	△7,560	7,773
일반회계	314,990	311,143	-	-	-	11,000	311,143	3,847	14,847
기타 특별회계	27,669	28,464	303	4,751	4,448	4,333	32,912	△5,243	△910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79	12,213	6,000	30	△5,970	-	6,243	△6,164	△6,164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9,418	△4,948	△12,060	△8,388	△7,560
통합재정수지 2	2,243	7,583	1,787	7,125	7,773

☞ 예천군은 통합재정수지에서 7,773백만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군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예천군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1	10,227
여성정책추진사업	5	1,29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0	7,87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6	1,056

-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ycg.kr>)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예천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83,393	5,580	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 원 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 원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5,580	
총무과	학교급식 지원	632	계속사업
“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75	“
“	농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	77	“
종합민원과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 (기초 및 심화과정)	40	“
문화관광과	소백산 하늘자락공원 조성사업	1,000	신규사업
농정과	으뜸 농특산물 공동판매장 설치(회룡포)	340	“
농정과	육묘용 상토 및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2,773	계속사업
건축도시과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568	신규사업
호명면	호명면 황지리 방범용 CCTV 설치	15	“
호명면	호명면 종산1리(도룡골) 배수로 설치	30	“
개포면	개포면 이사리(작은이사) 배수로 설치	30	“

4-3.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예천군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부서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9	72	182	158	365,525	349,395	16,130
기획감사실	1	3	5	4	13,630	9,588	4,042
주민복지과	1	8	23	25	63,406	60,890	2,516
총무과	1	4	12	3	50,667	48,288	2,379
재무과	1	3	8	6	2,342	1,660	682
새마을경제과	1	4	7	7	7,093	13,330	△6,237
종합민원과	1	4	11	6	1,328	1,510	△182
문화관광과	1	3	5	6	22,619	18,777	3,842
환경관리과	1	8	19	17	51,107	37,175	13,932
농정과	1	6	19	19	36,245	40,510	△4,265
산림축산과	1	4	12	13	12,027	12,652	△625
건설교통과	1	5	11	10	25,020	25,372	△352
건축도시과	1	5	10	6	16,455	23,965	△7,510
안전재난과	1	3	8	6	20,879	16,836	4,043
도청이전지원단	1	1	2	2	566	644	△78
보건소	1	2	10	5	6,594	6,720	△126
농업기술센터	1	2	7	10	5,153	5,015	138
문화체육사업소	1	4	6	7	10,819	6,440	4,379
곤충연구소	1	2	5	5	5,638	5,958	△320
의회사무과	1	1	2	1	758	781	△2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ycg.kr>)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0.86 (7.49)	59.61 (56.24)	19.86	20.42	59.11	156.92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ycg.kr>)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53	-
	부단체장	36	36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6	226	-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51	51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0	40	-
	의원국외여비	23	23	-
지방보조금		11,969	8,923	△3,04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34	934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36	-
공무원 일·숙직비 (천원)		50	50	-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 하세요(<http://lofin.moi.go.kr>)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방의회관령경비비,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기준액에 맞추어 편성하
- ☞ 지방보조금은 기준액 11,969백만원, 편성액 8,923백만원으로서 기준액 내에서 편성
- ☞ 공무원 일·숙직비는 1인당 기준액 5만원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2,405	△515

-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1,599	2,405
인건비 절감	△196	-
지방의회경비 절감	22	14
업무추진비 절감	16	12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10	△385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601	2,228
지방청사 관리·운영	750	536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

❖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 19	△ 515
지방세 징수율 제고	192	△ 297
지방세 체납액 축소	5	△ 217
경상세외수입 확충	337	556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226	△ 282
탄력세율 적용	△ 327	△ 275
지방세 감면액 축소	-	-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5년에 우리 예천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40
법령위반 과다지출	기술용역 공동계약 부적정	30
법령위반 과다지출	의료급여 수급자격 관리 부적정	1
법령위반 과다지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부적정	7
수입징수태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2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5년에 우리 예천군이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475
조기집행	상반기 조기집행 평가 전국 최우수	80
재정집행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1차 평가 전국 대상	180
수출정책평가	수출정책평가 경상북도 우수	75
합동평가	정부 합동평가 경상북도 우수	140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경기 수원시 경기 안산시 충남 천안시	경기 성남시 경기 안양시 전북 전주시	경기 고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경기 화성시 경남 창원시	경기 용인시 충북 청주시 경남 김해시
	시-(2)	경기 의정부시 경기 군포시 충남 아산시 경북 경주시 경남 양산시	경기 평택시 경기 광주시 전북 군산시 경북 구미시	경기 시흥시 경기 김포시 전북 익산시 경북 경산시	경기 광명시 강원 춘천시 전남 여주시 경남 진주시	경기 파주시 강원 원주시 전남 순천시 경남 거제시
	시-(3)	경기 이천시 경기 오산시 충북 충주시 전남 광양시	경기 구리시 경기 하남시 충북 제천시 경북 김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의왕시 충남 서산시 경북 안동시	경기 안성시 경기 과천시 충남 당진시 경남 통영시	경기 포천시 강원 강릉시 전남 목포시
	시-(4)	경기 동두천시 강원 삼척시 전북 정읍시 경북 영천시	경기 여주시 충남 공주시 전북 남원시 경북 상주시	강원 동해시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 경북 문경시	강원 태백시 충남 논산시 전남 나주시 경남 사천시	강원 속초시 충남 계룡시 경북 영주시 경남 밀양시
군	군-(1)	부산 기장군 경기 가평군 충남 홍성군 전남 영암군 경남 거창군	대구 달성군 강원 홍천군 충남 예산군 전남 무안군	인천 강화군 충북 진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칠곡군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전남 고흥군 경남 함안군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전남 해남군 경남 창녕군
	군-(2)	경기 연천군 충남 서천군 전남 영광군 경북 울진군	강원 정선군 충남 태안군 전남 장성군 경남 고성군	충북 영동군 전북 고창군 전남 완도군 경남 하동군	충북 괴산군 전북 부안군 전남 신안군 경남 함양군	충남 금산군 전남 화순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합천군
	군-(3)	인천 옹진군 강원 고성군 전남 보성군 경북 고령군	강원 횡성군 충북 옥천군 전남 장흥군 경북 성주군	강원 영월군 충북 증평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예천군	강원 평창군 전북 순창군 경북 영덕군 경남 남해군	강원 철원군 전남 담양군 경북 청도군 경남 산청군
	군-(4)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전북 임실군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강원 양구군 충남 청양군 전남 곡성군 경북 청송군	강원 인제군 전북 진안군 전남 구례군 경북 영양군	강원 양양군 전북 무주군 전남 함평군 경북 봉화군	충북 보은군 전북 장수군 전남 진도군 경북 울릉군
자치구	구-(1)	서울 성북구 서울 강서구 서울 송파구	서울 노원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강동구	서울 은평구 서울 관악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서초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남구
	구-(2)	서울 종로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중구 서울 중랑구 서울 금천구	서울 용산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동작구	서울 성동구 서울 도봉구	서울 광진구 서울 서대문구
	구-(3)	부산 진구 대구 북구 인천 연수구 광주 서구 울산 남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울산 북구	부산 사하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부산 강서구 인천 중구 인천 계양구 대전 서구	대구 동구 인천 남구 인천 서구 대전 유성구
	구-(4)	부산 중구 부산 남구 부산 사상구 광주 동구 울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북구 대구 중구 광주 남구 울산 동구	부산 동구 부산 금정구 대구 서구 대전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연제구 대구 남구 대전 중구	부산 동래구 부산 수영구 인천 동구 대전 대덕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u>시·도는 회계년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년도 시작 40일 전까지</u>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u>회계년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 회에서는 회계년도 시작 10일 전까지</u>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3조(예산의 이송·고시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u>3일 이내</u>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u>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u>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은 제13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u>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년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년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 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 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 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년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년도부터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